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-116
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2017. 10. 24. 개정된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하고자 함.
- 다. 2016. 1. 19. 개정된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거나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정비하고 주차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라.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시간 제한을 명시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차장법」 제6조 제3항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 뿐 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(안 제5조의2 개정)
- 나.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

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(안 제5조의4 신설)

- 다.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(안 제21조의5 신설)
- 라.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간 명문화 함 (안 제2조제1항 관련 [별표1]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8. 10. 11. ~ 10. 31. (제출의견 없음)
 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권고사항 없음
 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 - 4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6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제6조의2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”로,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,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“공유주차구획”이란 유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.

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포인트, 요금 감면혜택, 배정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 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의3제2항제3호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(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·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)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. 다만,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,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

별표 1 비고 제15호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 최대 2시간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의2(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5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제6조의2제1항제5호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) -----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----- -----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,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<삭 제></p>
<p>1.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도로의 길이,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</p>	<p><삭 제></p>

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신 설>

제5조의4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

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“공유주차구획”이란 유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.

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포인트, 요금감면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의3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

제21조의3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 ① -----

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4. (생략)

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,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

----- 각호의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-----

----- 감정평가업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6개월 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다.

1. · 2. (생 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4. (생 략)

<신 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----- ----- ----- 감정 평가업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6개월 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5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(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·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)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. 다만,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,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- 비고 -

1. ~ 14. (생 략)

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
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
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
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
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
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
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
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
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
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
분의 30을 할인한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례)

- 비고 -

- ### 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

16. ~ 23. (생 략)

16. ~ 23.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-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김계완
연락처	02-3153-9662